

공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 - 133 호

## 2026년 제4차 공능유적본부[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]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

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5월 7일  
공능유적본부장

### 1.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

채용 분야	직 종	인원	담당업무	근무예정지
시설물관리원(다급)	촉탁직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경(수목, 잔디, 관람로 등) 관리</li> <li>○ 각종 시설물(고건물 포함)관리 및 경상 관리, 임야관리 업무 등</li> <li>○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</li> <li>※ 구체적인 세부 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름</li> </ul>	광릉 (휘경원 포함)
안전관리원(야간) *감시적단속근로자	공무직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·재해 사고방지 및 대체를 위한 방법, 방호, 방화, 방재 업무</li> <li>○ 관람객 퇴장 안내, 관람질서유지, 안전사고 예방 업무</li> <li>○ 수표업무 지원</li> <li>○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</li> </ul>	동구릉

※ 채용 분야(연번)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,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

※ 동부지구관리소 내 타 관리소로 (동구릉, 광릉, 홍유릉, 사릉) 순환근무(전보) 할 수 있음

### 2. 응시자격 (판단기준일 : 최종시험예정일)

#### 가. 공통요건

○ 응시연령 \*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

직 종	응시연령	비 고
공무직	만 18세 이상 ~ 만 60세 미만	
촉탁직	만 60세 이상 ~ 만 70세 미만	

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. 단,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

○ 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**공정 채용기준 채용 결격사유**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**나. 우대사항 [판단기준일 : 원서접수 마감일]**

○ 우대사항: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

채용분야	근무경력	자격증
안전관리원(야간)	경비, 방호, 소방, 방범분야	경비지도사, 응급구조사, 소방안전관리자
시설물관리원 다급	임업, 산림, 조경, 전기관련 분야	<임업/산림/조경/전기 관련 자격증 - 국가기술자격법> 산림기능사, 산림산업기사, 산림기사, 산림기술사, 식물보호산업기사, 식물보호기사, 임업종묘기능사, 임업종묘기사, 조경기능사, 조경산업기사, 조경기사, 조경기술사, 시설원예기사, 시설원예기술사, 원예기능사, 전기기능사, 전기산업기사, 전기기사, 전기기능장, 전기공사산업기사, 전기공사기사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소방설비(전기분야)산업기사, 소방설비(전기분야)기사, 전기안전기술사

※ 우대사항은 서류전형(적극적) 단계에서만 적용

- ※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(단순 교육이수 및 수료증 등 불인정)
- ※ 근무경력은 연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.
- ※ 반드시 응시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)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,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, 직급(직위), 담당업무(예시: 관람객 안전관리, 청사 방호, 조경관리, 청소 등)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(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
### 3. 근무기간 : 『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』에 따름

- 공무원: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며, 평가를 거쳐 공무원 전환 여부 결정

- ※ 수습 평가 시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
  -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수습 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
- ※ 수습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(수습제도)를 따름

- 축탁직: 채용일로부터 ~ 당해 연도 12. 31.까지. 단, 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

- ※ 축탁직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을 따름

### 4. 근로조건 및 보수

- 근무시간 및 형태

직급	채용분야	근무지	근무시간	근무형태	채용 예정일	비고
축탁직	시설물관리원다급	광릉 (휘경원 포함)	09:00~18:00	주5일 근무 (월요일 포함 2일 휴무)	'26.5월중	주말 및 공휴일 정상근무
공무직	안전관리원(야간)	동구릉	18:00~익일09:00	2교대, 격일제 *감단근로자		

- ※ 단, 기관 사정(근무지)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

- 보수 : 궁능유적본부 2026년 공무원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의함

채용분야	보수 ※ 2026년 직종별 통합임금기준 1호봉 기준			
	계	기본급	정액급식비	야간근로 가산수당
시설물관리원 다급	2,257,170원	2,097,170원	160,000원	-
안전관리원(야간)	2,295,860원	1,679,590원	160,000원	456,270원

- 후생복지

-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- 명절휴가비(연 2회 설·추석 각 기본급(60% 지급))

## 5. 시험방법: 서류전형+면접시험

- (1차 시험) 서류심사
  -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. (소극 전형)
  -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(적극 전형)
- (2차 시험) 면접심사
  -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
  -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,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  -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## 6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■ 채용공고	'26.5.7.(목)~5.13.(수)	<b>등기우편접수</b> (접수마감일인 '26.5.13.(수) 소인분에 한해 인정)
■ 응시원서 접수	'26.5.7.(목)~5.13.(수)	
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	'26. 5. 19.(화)	국가유산청, 공능유적본부, 조선왕릉누리집 공고
■ 면접시험 예정일	'26. 5. 21.(목)	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■ 최종 합격자 발표	'26. 5. 26.(화)	국가유산청, 공능유적본부, 조선왕릉 누리집 공고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 등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## 7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'26. 5. 7.(목) ~ 5. 13.(수) 09:00~18:00까지
- 접수방법: 접수기간 내 **등기우편**으로 접수
  - 봉투 겉면에 “응시원서 재중” 표기
- ※ 등기우편접수는 **접수마감일 소인분(빠른 등기)에 한해 접수**하며,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.
- ※ **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**
- 접 수 처: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채용담당자
  - 주소 : (11910)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
- ※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## 8. 제출서류

목록	비고
1.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(필수)	
2. 응시원서(필수)	서식 1
3. 입사지원서 1부(필수)	서식 2
4. 자기소개서 1부(필수)	서식 3
5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(필수)	서식 4
6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(필수)	서식 5
7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(반환 필요시) ※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파기(파쇄 등) 됨	서식 6
8. (우대사항) 관련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, 사본) ※ 경력은 제출한 경력(재직)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, 직급,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해당기관(단체)의 관인 날인 필수)	
9. (우대사항) 관련 자격증(해당자에 한함, 사본)	

※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## 9. 재공고 사항

- 공고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

## 10.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**14일 부터 90일까지**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, 팩스 (031-579-4920)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관련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. 단,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합니다.

## 11. 채용비리 관련
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(공정채용 확인서)를 제출
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기준 제26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## 12. 기타 사항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고, 응시자의 기재착오·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(결격사유)이 발견되거나,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국가유산청, 조선왕릉 누리집에 재공지 할 계획입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(031-579-490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서식 :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, 응시원서,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동의서

##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

성 명	응시 분야
	<input type="checkbox"/> (촉탁직) 시설물관리원 다급 <input type="checkbox"/> (공무직) 안전관리원(야간)

※ 응시분야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작성목록(총괄표)

※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계 1개로 고정하여 제출(양면, 2면 인쇄금지)

목 록	작성 여부
1.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(필수)	
2. 응시원서(필수) * 서식 1호	
3. 입사지원서(필수) * 서식 2호	
4. 자기소개서(필수) * 서식 3호	
5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* 서식 4호	
6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필수) * 서식 5호	
7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반환 필요 시) * 서식 6호	
8. 우대사항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
9.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	

\* 내용을 작성·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“○” 표시,

# 응시원서

본인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.

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6년 월 일 성명 : (서명)  
6

궁능유적본부장 귀하

※ 접수 번호			응시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(축탁직)시설물관리원 다급 <input type="checkbox"/> (공무직)안전관리원(야간)	사진부착 불요함
성명	한글		생년월일	. . . (만 세)	
	한자		근무지	<input type="checkbox"/> 광릉 <input type="checkbox"/> 동구릉	
주소					
전화 (휴대전화)	(집)전화 : ( ) 휴대폰 :				

※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

<b>응시표</b>					사진부착 불요함
<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험 >					
성명	한글		생년월일		
	한자				
※ 응시 번호			응시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(축탁직)시설물관리원 다급 <input type="checkbox"/> (공무직)안전관리원(야간)	
2026년 월 일 궁능유적본부장 (인)					

## 응시원서 작성요령

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(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)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
1. 응시분야 :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
2. 성 명 : 한자(漢字)는 정자로 기재
3. 생년월일 :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
4. 주 소 :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
5. 연 락 처 :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

「※」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

## 자 기 소 개 서

### ◎ 자기소개서

(유의사항) 작성 시 **학교명, 가족관계(학력, 지위, 재산) 등 개인 신상**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**불이익(감점)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○ 작성요령

- 분량은 최대 **A4용지 2매** 이내로 하고,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
· 글씨크기 12, 줄간격 150%,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, 머리말,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

**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**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<b>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</b>                 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2. <b>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</b>                 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               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                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<b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</b>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b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b>                 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<b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b>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<b>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b>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               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생년월일

지 원 자

(서명)



[서식-6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만 작성</p>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공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 귀하

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